



1

교통규칙

도로는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합니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교통매너를 실천하는 것이 사회인의 의무입니다.

1-1 보행시 유의할 점

(1) 통행시

사람은 오른쪽, 차량은 왼쪽의 대면통행이 기본

- 도로의 오른쪽 끝을 통행합니다.
- 보도나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 가장자리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을 통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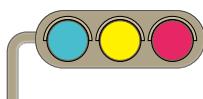


(2) 횡단 방법

안전한 장소를 횡단

- 신호기가 있는 장소나 횡단보도, 육교, 횡단용 지하도가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 곳을 횡단합니다.
- '보행자 횡단금지'의 표지가 있는 곳은 절대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손을 들거나 운전자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횡단합니다.
- 횡단 중에도 차가 오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신호등의 의미



- 녹색신호 : 전진합니다.
- 노란신호, 녹색신호의 절멸 :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횡단중이라면 신속하게 횡단하거나 횡단을 멈추고 되돌아갑니다.
- 빨간신호 :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 누름단추식 신호기의 경우 : 버튼을 누르고 푸른 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한 후에 횡단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장소를 횡단할 경우

- 좌, 우가 모두 잘 보이는 곳에서 횡단합니다.
- 건너기 전에 일단 멈춰서서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가 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자동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 횡단중에도 차가 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면서 곧장 걸어갑니다.

철길 건널목의 통행방법

- 철길 건널목 바로 앞에선 반드시 멈춰서서 좌측과 우측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경보기가 울릴 때나 차단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철길 건널목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3) 야간에 도로를 걸을 경우

밝은 색 복장과 반사재의 착용

야간에 도로를 걸을 때에는 흰색과 노랑색의 밝은 색 복장을 하고 반사재용품이나 LED 라이트를 몸이나 소지품에 장착하여 자동차에서 잘 보이도록 합시다.

1-2 자전거를 탈 때의 유의점

(1) 자전거의 통행 규칙 ‘자전거 안전이용 5 대 규칙’의 준수

제 1 규칙 차도가 원칙, 좌측을 통행. 보도는 예외, 보행자를 우선



- 자전거는 차량이므로 원칙적으로 차도의 좌측에 불어 통행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합니다.
- 도로의 좌측에 있는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보도통행 가능 표지가 있는 보도에서는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만 13 세 미만의 어린이나 만 70 세 이상의 고령자, 몸이 불편한 사람은 보도를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차도 쪽을 금방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 통행해야 합니다.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 2 규칙 교차로에서는 신호와 일시정지를 지키며 안전 확인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나서 안전을 확인하고 횡단합니다.
-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제 3 규칙 야간은 라이트를 점등

- 야간은 라이트를 점등해야 합니다.
- 자전거를 타기 전에 조명이 켜지는지 점검합시다.



제 4 규칙 음주운전은 금지

- 술을 마시면 절대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제 5 규칙 어린이는 헬멧을 착용

- 자전거를 탈 때는 승차용 헬멧을 씁시다.
 - 다른 사람을 자전거에 승차시킬 때는 승차용 헬멧을 씨우도록 합시다.
-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유아를 유아용 의자에 태울 때에는 어린이에게 승차용 헬멧을 씨우도록 합시다.

기타 규칙

- 2인 승차나 병렬주행은 하지 맙시다.
- 운전 중에 우산을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맙시다.
- 대인손해보험 등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책임이나 자신의 부상에보험으로 대비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손해보상책임을 보상하는 "자전거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은 도쿄도나 오사카부 등 많은 지역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itensha-kyogikai.jp/project/#insurance-promotion>



(2) 교차로 통행법

우회전할 경우

- 신호등이 있을 때
녹색신호에서 교차로의 좌측을 따라 건너편의 모퉁이까지 직진한 후, 멈춰서 방향을 바꿉니다. 대면하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 전후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직진합니다.
- 신호등이 없을 때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따라 건너편까지 직진한 후, 안전을 확인한 후에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직진합니다.

좌회전할 경우

좌회전했을 때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전거 횡단대가 있는 장소

교차로나 그 근처에 자전거 횡단대(횡단용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에는 그곳을 통행합니다.



1-3

자동차 (오토바이를 포함) 를 운전할 경우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도로의 좌측을 통행해야 합니다.
- 보행자나 자전거의 측면을 지날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거나 서행해야 합니다.
- 음주를 한 후에는 절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음주를 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행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만 6 세 미만의 어린이는 차일드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a.go.jp/english/bureau/traffic/index.html>



2

운전면허

일본에서 자동차 (오토바이를 포함) 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방법은 다음의 3 가지가 있습니다.

- ① 일본의 운전면허를 취득
- ②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제네바 조약 체결국이 발급한 것으로 정해진 양식에 일치하는 것)
- ③ 대사관 등에서 작성하여 일본어번역문을 첨부한 외국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의 6 개 나라와 지역)

* 모페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①~③ 중 한가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 ②와 ③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최장 1 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a.go.jp/english/bureau/traffic/index.html>



2-1

일본의 운전면허 취득

- 일본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일본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러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 운전면허센터 등에서 기능시험, 학과시험, 적성시험(시력 등)을 치러 합격해야 합니다.
- 자동차학교(지정자동차교습소)를 졸업하면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② 외국의 운전면허를 일본의 운전면허로 변경하는 방법

- 외국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전에 대한 필요한 지식, 기능 등을 확인하여 운전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학과시험 등 기능시험 이 면제됩니다.
- 외국의 운전면허 취득 후 그 나라에 3개월 이상 체재하였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도도부현에 있는 경찰 운전면허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경찰 운전면허센터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일본의 운전면허증 간신 등



운전면허 간신

- 일본의 운전면허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로 간신수속에 필요한 것들이 쓰여진 엽서가 송부됩니다. 기한 내에 간신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 간신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의 주소 등의 변경

- 운전면허증에 쓰여진 성명이나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 등에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십시오.

2-3

운전면허 점수제도

-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일정 점수가 부여됩니다.
- 과거 3년간의 점수합계에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3

자동차(오토바이 포함)의 보유

3-1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나 주소 등에 변경이 있을 때나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1) 등록신청이 필요할 때와 등록신청 명의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신청

- 사용하지 않았던 자동차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 신규 등록

사용중인 자동차의 등록신청

-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이 변경될 때
→ 변경 등록
- 자동차 소유자가 바뀔 때
→ 이전 등록
- 자동차를 폐차할 때와 자동차를 수출할 때
→ 말소 등록

(2) 등록신청을 받는 장소와 문의처

- 등록신청은 전국 91 개소의 운수지국이나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택에서 가까운 운수지국이나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운수지국 안내

https://www.mlit.go.jp/jidosha/kensatoroku/ans_system/help02.htm



3-2

차고지증명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주차시킬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자동차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확보한 차고지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서(차고지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경자동차는 보관장소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고지 신청은 도쿄도 23 구와 시, 정, 일부 촌입니다. 경자동차는 도쿄도 23 구와 일부의 시입니다.

자세한 차고(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보관장소(주차장)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자동차(일부의 오토바이를 포함) 검사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로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 검사(차검)를 받아야 합니다.
- 차검을 받는 방법에는 2 가지가 있습니다.

① 정비공장에 차검을 의뢰하는 경우

일본에서는 현재 약 90%의 사람이 차검을 정비공장에 의뢰하고 있어, 자동차의 정비나 검사를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검 의뢰에 관해서는 파란색 간판(지정 공장), 노란색 간판 또는 녹색 간판(인정 공장)을 설치한 가까운 정비공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인이 차검을 받는 경우

일본에서는 현재 약 10%의 사람이 본인이 직접 차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엔 국가 시설인 운수지국 등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검을 받을 수 있는 운수지국 등은 전국에 93 개소(경자동차의 경우는 89 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정비 등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받는 차검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운수지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운수지국 안내

https://www.mlit.go.jp/jidosha/kensatoroku/ans_system/help02.htm



경자동차에 대한 안내

https://www.keikenkyo.or.jp/procedures/procedures_000134.html



- 차검에 합격하면 유효기간이 명시된 차검증과 검사표장(스티커)이 발행되므로 스티커를 자동차의 앞유리창(오토바이는 차량 번호판 왼쪽 위)에 부착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차검증을 휴대해 주십시오.

3-4 자동차보험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이란

-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가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 교통사고로 상대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범률에 의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증명서가 발행되므로,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증명서를 휴대해 주십시오. 또한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오토바이에는 보험(공제) 표장(스티커)도 발행되므로, 번호판의 좌상부(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경우는 번호판의 보기 쉬운 부분)에 부착해 주십시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상대방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거액의 치료비나 위자료를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lit.go.jp/jidosha/anzen/04relief/index.html>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려면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은 다음의 취급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회사(공제조합)의 지점, 대리점 등
- ② 차나 오토바이 판매점 등
- ③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우체국(일부 취급하지 않는 우체국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공제조합), 인터넷, 편의점

* 가입절차에 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취급점에 문의하십시오.

(2) 임의보험 (공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했어도 물손사고 (차 등의 물건이 손상된 경우) 등은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는 ‘임의보험 (공제)’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과 임의보험 (공제)의 차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	임의보험 (공제)
가입방법	강제가입	임의가입 (민간의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
보상대상	대인배상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인신상해 • 차의 보상 등 <p>계약에 따라 다양함</p>
보상액	상한 있음	상한은 계약에 따라 다양함

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4-1

차량의 운전을 정지

- 즉시 차량의 운전을 중지하십시오.
-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량을 갓길이나 공터 등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4-2

구급·경찰에 통보



-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구급차 (전화번호: 119 번)를 부릅니다.
- 구급차가 올 때까지는 부상자를 불필요하게 움직이게 하지 말고, 오퍼레이터의 지시에 따라 지혈 등 가능한 범위의 구호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 부상자 유무에 상관없이 경찰 (전화번호: 110 번)에 통보해야 합니다.
- 경찰관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 경찰관이 도착하면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현장 확인을 받습니다.



4-3

의사의 진단

- 사고 발생시에는 큰 부상이 아닌 경상이라 생각해도 나중에 큰 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속하게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a.go.jp/english/bureau/traffic/index.html>



4-4

교통사고 증명서의 신청

- 교통사고 후의 여러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증명서' 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증명서' 는 자동차 안전운전센터에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사고 신고를 한 경찰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의 '교통사고 증명서' 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경찰에 통보해 주십시오.

자동차 안전운전센터

<https://www.jsdc.or.jp/center/tabcid/106/Default.aspx>

